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6호의8서식] <신설 2014.7.17>

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 기간 3일

신청인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
	상호(명 칭)		전화번호
	주소		

사 육 시 설	소재지			
	일반사육관리 기준	[ ] 물과 음식 제공 [ ] 행동 관리 [ ] 행정	[ ] 적당한 환경 제공 [ ] 교육, 설명과 관람객 체험 [ ]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육사	[ ] 동물 건강관리 [ ] 보존 [ ] 안전관리
	사육개시일			
	사육조건			
	관리방법			

신고사유	[ ] 등록증 분실	신청사유 발생일	
	[ ] 등록증 훼손		
	[ ] 그 밖의 사유:	등록증 분실장소	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유역환경청장(지방환경청장) 귀하

신고인(대표자) 제출 서류	없 음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	→	등록증 재발급
신청인		유역(지방)환경청		유역(지방)환경청		유역(지방)환경청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